

보도	2025.4.8.(화) 조간	배포	2025.4.7.(월)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	책임자	부국장 박항신 (02-3145-8880)
		담당자	선 임 양길남 (02-3145-8735)
	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	책임자	실 장 공진규 (02-368-4094)
		담당자	팀 장 김영훈 (02-368-4302)

2024년 **자동차 보험사기** **할증보험료 환급실적** 및 **피해구제 절차 적정성** 점검결과

〈 주요 내용 〉

- ◆ 금융감독원은 '24년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) 3,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.7억원을 환급
 - 전년(약 12.2억원) 대비 약 3.5억원 증가(28.7%↑)하였고, 이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('24.8~10월)을 실시(2.7억원 환급)한 것에 기인
- ◆ 아울러, 금융감독원은 '24.12월 규정화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,
 - 점검결과 대부분의 손해보험사*는 피해사실 안내 및 관련 구제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
 - * 일부회사는 피해사실 공유(보험개발원 통보) 누락 등 미흡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
- ◆ 향후 금융감독원은 관련 피해구제 절차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,
 -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휴면보험금 출연을 검토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

〈 피해사실 확인 방법 〉

- ①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**보험사기 피해자**에게 피해사실 및 **할증보험료 환급** 등을 **안내**하며, 피해사실은 **담당 설계사**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
- ②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「**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**」*를 통해서도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, 할증보험료 환급 신청이 가능

*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(FINE)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

👉 <붙임2>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조회 방법

1

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'09.6월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)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중입니다.
- '24.8.14.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되었고,
-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의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('24.12.24.)하였습니다.

[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주요 내용]

- **(고지기한·방법)** 손보사가 통지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 등)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고지
 -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(30일)에 게시하고,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 확인
- **(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)** 피해사실을 고지받은 피해자의 동의 후 즉시 환급

2

'24년 할증보험료 환급실적

- '24년 기간 중 12개 손해보험사*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,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.7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.

*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손해보험회사(삼성, DB, 현대, KB, 메리츠, 한화, 롯데, AXA, 흥국, 하나, 캐롯, MG, 총 12개사)

- 이는 전년도 환급실적(12.2억원) 대비 약 3.5억원이 증가(28.7% ↑)*한 수치입니다.

* 환급인원은 33.4% 증가(2,568→3,426명), 계약건수는 31.7% 증가(8,605→11,332건)

- 주요 증가 사유는 금융감독원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('24.8.14.~10.31.)*을 실시한 것에 기인합니다.

* 동 캠페인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,026명에게 약 2.7억원을 환급

< 그간의 할증보험료 전체 환급실적 >

- ◆ '09.6월 이후 '24년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 2천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명, 건)

구분	사전 환급	'09.6월 ~ '22.12월	'23.1월 ~ 12월	'24.1월 ~ 12월	캠페인	합계
금액	490	6,601	1,216	1,571	273	9,878
인원	908	15,420	2,568	3,426	1,026	22,322
계약건수	2,971	54,773	8,605	11,332	2,674	77,681

3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 점검

-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안내의 누락을 방지하고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환급하기 위하여,
-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,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.

※ 피해구제 업무절차 점검 개요

1. 피해사실 고지기준	2. 홈페이지 게시 등	3. 판결문 수집·관리	4. 피해사실 공유
매뉴얼 신설(15일 이내, 최소 4회 이상 고지)	미환급 피해사실 게시 및 변경주소 확인	보험사기 판결문을 사내 시스템에 등록	보험사기 피해사고를 보험개발원에 통보

- 점검 결과,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으나,
-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(보험개발원 통보)가 누락되는 등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
< 보험사 우수사례 >

- ◆ A화재는 담당 설계사 등이 피해사실·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본인정보를 입력하는 홈페이지 화면 운영
- ◆ B화재는 공공마이데이터로 상시 주소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내전산 개발 예정

4

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

- 금융감독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- 손해보험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하여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·추진하겠습니다.
 -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손해보험사가 관련 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 보험료 환급 등을 안내합니다.
 - 아울러, 보험개발원의 「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*」를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*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(FINE)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시스템 접속이 가능
(☞ <붙임2>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조회방법)

[보험사기(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행위 포함) 신고 방법]

- ▶ (유선 상담·신고) ☎1332 - 4번(금융범죄) - 4번(보험사기)
 - ▶ (인터넷 접수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상단 『민원·신고』 → 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 - ▶ (우편 접수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- 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
(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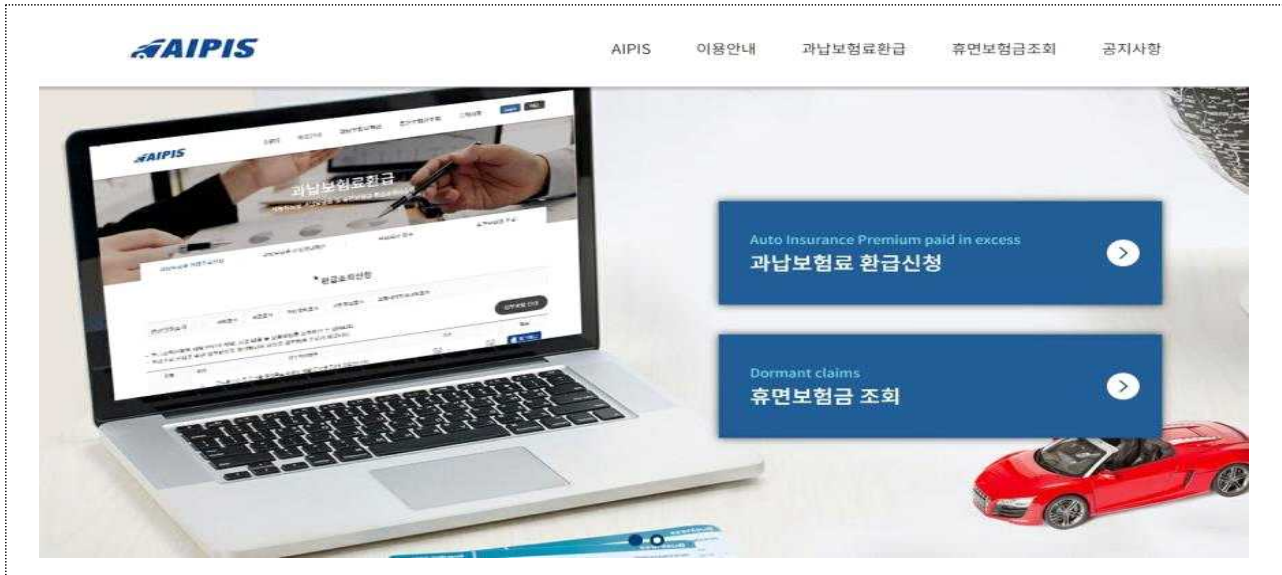
※ 할증보험료 환급에 관련한 안내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식 SNS에서 카드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• 인스타그램 https://www.instagram.com/p/DIIEI5PT6MO/?img_index=1	카드뉴스(인스타그램, 네이버 블로그) 
• 네이버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blogId=fss2009&logNo=223824634751&categoryNo=168&parentCategoryNo=&from=thumbnailList	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1

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조회방법

- 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idi.or.kr>) 접속 → KIDI 광장 또는 주요 서비스의 “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” 링크 접속 → “과납보험료 환급신청”



- ② 휴대폰 문자인증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

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
과납보험료 신청결과확인
휴면보험금 조회
보험회사 정보

로그인

☒ 개인고객
☐ 법인고객

주인등록번호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

1.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

1) 수집·이용 목적

-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신청확인 및 결과조회

2) 수집·이용할 항목

- 개인식별정보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
-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입력하신 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및 전화번호, 이메일 등
-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보험정보를 조회한 기록

3) 보유·이용기간

- 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개월간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3개월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됩니다.

4)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☐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☐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③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“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” 버튼 클릭

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
과납보험료 신청결과확인
휴면보험금 조회
보험회사 정보

환급조회신청

연관업무조회
계약조회
사고조회
가입경력조회
차량정보조회
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
구조변경차량조회

-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본인의 계약, 사고 내용 등 보험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환급조회 신청을 위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병무청 연계조회를 통한 군 운전경력기간 증빙은 2014.1.1 이후 전역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
첨부파일 안내
병무청연계조회 안내

유형	체크	필수확인항목	기간	첨부
- 환급조회신청을 위해 본인의 계약, 사고 내용 등 보험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- 환급조회 신청을 위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전화번호				

요청
취소

④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

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
과납보험료 신청결과확인
휴면보험금 조회
보험회사 정보

보험사기피해 환급조회신청

연관업무조회
계약조회
사고조회
가입경력조회
차량정보조회
보험사기피해내역조회
구조변경차량조회

조회
출력

- 귀하의 보험사기피해내역입니다.

보험사기피해사고 처리회사	사고일시	사고 차량번호
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

- 해당계약은 보험사기사고 이후에 본인이 가입한 해당사고와 관련된 계약이며, 해당계약 중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순번	환급보험사	보험기간	차량번호	담당자번호	환급여부
- 환급여부 O : 환급완료된 계약 또는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입니다. - 환급여부 X : 귀하께서 보험사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하는 계약입니다. 다만, 자료가 오래되어 환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계약도 포함될수 있습니다. - 해당내용에 대하여 환급요청을 하시려면 아래 환급요청을 click하시기 바랍니다.(단, 환급여부가 'X' 건에 대하여 환급요청됩니다.)					
전화번호					

환급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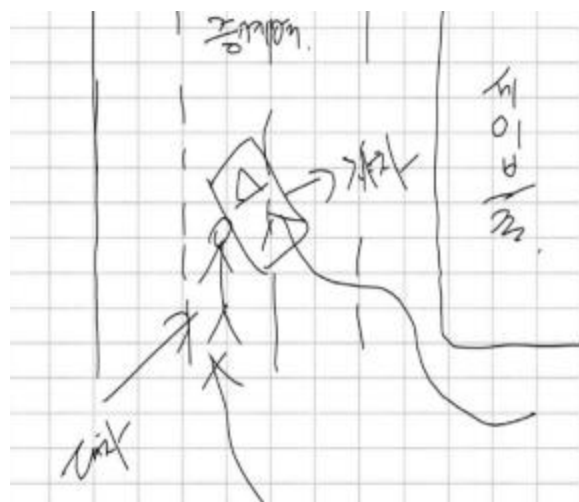
①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해 749만원 환급

- **(개요)** '20.5월 보험사기범 A는 하계역 사거리에서 타인명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,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보험사기 피해자 B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
 -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기 피해자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4만원을 수령, 유사한 사고를 반복
- **(사법처리 결과)**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('23.11월)
- **(보험료 환급)**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신규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총 749만원을 환급('24.10월)

<블랙박스 영상 캡처(피해자)>



<고의사고 관련 사고약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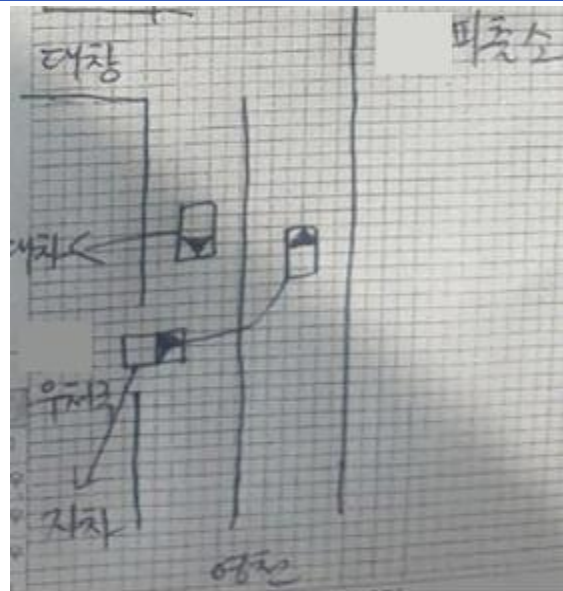
②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33만원 환급

- (개요) '19.7월 보험사기범 C는 영천시 우체국 주차장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보험사기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뒷범퍼를 고의로 충돌하였으나,
 -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사기 피해자 D의 사고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2만원을 수령
- (사법처리 결과)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('23.7월)
- (보험료 환급)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신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3만원을 환급('24.10월)

<파손부위 사진(혐의자)>



<고의사고 약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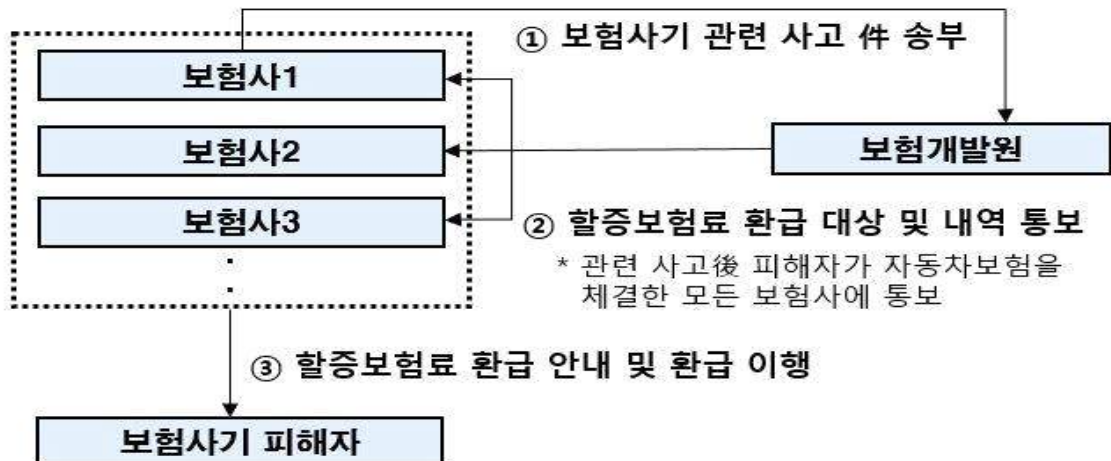


붙임3

할증보험료 환급 절차

- 손보사는 확보한 보험사기 판결문을 바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

<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 >



- ①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* (유죄판결, 기소유에 포함)한 후 관련 사고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송부

* (가) 손보험회는 손보사의 판결문 발급(사건번호)·확인 요청을 취합하여 검찰청에 발급민원신청 (나) 협회는 검찰청에 신청한 판결문(사건번호)을 각 보험사에 제공

- ② 보험개발원은 관련 사고 후 보험사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(갱신, 재가입 등)에 할증보험료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

- ③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확인한 보험사기 피해자(보험계약자)에게 먼저 연락하여 할증보험료를 환급

- ④ 손해보험사는 할증보험료 미환급 피해자에게는 15영업일 동안 환급안내 (최대 4회) 후 최종 무응답시 홈페이지에 피해사실을 30일간 게시